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본 자료는 정부의 SOC 투자확대, 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1일 경제장관 간담회와 7월2일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을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로서 회원사 업무에 도움주고자 편집 게재합니다.

-편집자주-

I. 건설경기 동향 및 전망

- 01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지난해에는 96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지난해 건설투자는 수출호조와 함께 소비·설비투자 부진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
- 그러나, 건설수주·건축허가 등 선행지표들이 작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급격히

03년도 성장기여도
(%p)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순수출
△0.8	△0.2	1.3	2.8

(실질기준, %)

	96	97	98	99	00	01	02	03
GDP성장률	7.0	4.7	△6.9	9.5	8.5	3.8	7.0	3.1
건설투자	7.5	2.3	△12.4	△3.7	△0.7	6.0	5.3	7.6

* 건설투자/GDP 비중(03) : 18.6%(명목 기준), 17.5%(실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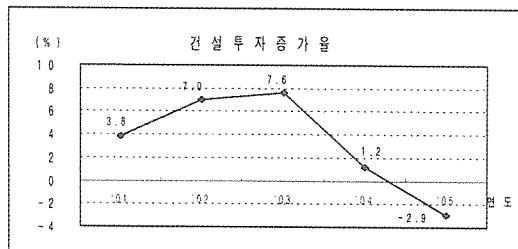
위축, 금년 들어 건설경기가 점차 둔화 - 건설기성은 기존 수주물량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게 둔화되고 있고, 건설수주가 금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
 * 건설기성 증감율(%) : (03.4/4) 18.6 → (04.1/4) 9.8 → (4) 14.7 → (5) 9.4
 * 건설수주 증감율(%) : (03.4/4) 2.1 → (04.1/4) △14.2 → (4) △14.6 → (5) △24.0
 * 건축허가 증감율(%) : (03.4/4) △13.6 → (04.1/4) △27.7 → (4) △19.2 → (5) 6.6
 : '04.5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다가구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다가구주택 허가물량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반등
 ⇒ 금년도 건설투자는 '03년 7.6%에서 1%대로 증가율이 대폭 둔화되고, 특히 내년에는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

○ 연구기관들은 금년 건설투자 증가율을 3%대에서 1.5%내외로 하향 조정
 · KDI(2.1%→1.1%), LG연(3.2%→1.5%), 한경연(3.2%→1.5%) 등
 ■ 분기별로는 건설투자 비중이 1/4분기가

가장 낮고 2/4~4/4분기에 높아지는 패턴(4/4분기가 가장 높음)으로,

- 앞으로 건설경기가 둔화되고, 재정 조기 집행 영향 (SOC예산 04.上 9.2 → 下 7.5조원) 까지 고려하면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경기 위축 심화 예상

〈 국토연구원의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 '04.6 〉



■ 공종별로는 비중이 높은 건축 부문의 둔화세가 두드러질 전망

* 건축 : 토목 비중(04.1/4) = 70:30 수준
(주거용 33%, 비주거용 37%)

○ 건축부문은 상반기에는 기존 수주물량으로 일정수준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나, 하반기 이후에는 주택 및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둔화폭 확대 예상

* 주택수주 증감률(%) :

$$(03.4/4)18.2 \rightarrow (04.1/4)\Delta 37.2$$

* 상업용 건물 수주 증감률(%) :

$$(03.4/4)38.5 \rightarrow (04.1/4)\Delta 48.2$$

○ 토목부문은 수주물량이 작년 4/4분기에 일시 감소세였으나, 금년에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거의 보합 수준을 보일 전망

⇒ 비중이 큰 건축분야의 감소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 기여도 둔화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큰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은 일자리 창출에도 애로요인

【사례】 건설경기 둔화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 추정

○ 건설경기가 지난해 7.6% 성장에서 금년 1.5% 내외의 증가로 둔화될 경우 성장률 1.2%p 둔화 효과(약 7.6조원)

○ 내수부문에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 7.5~9.0% 또는 민간소비 1.5~1.9% 추가 성장이 필요
GDP 대비 비중(03. 실질기준)
: 민간소비 52.6%, 건설투자 17.5%, 설비투자 10.7%

으로 작용

○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를 상회하나

*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건설업 20.8
제조업 14.4

▷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수/ 최종수요액(10억원, 2000년기준)

○ 금년 1/4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면서 건설업 취업자 증가율이 전체 취업자 증가율을 하회

* 전체 취업자 증감율(%) : (03연간) △0.1,
(03.4/4) 0.0 → (04.1/4) 2.2

건설업 취업자 증감율(%) :

(03연간) 4.0, (03.4/4) 2.3 → (04.1/4) 1.6

○ 특히, 건축부문이 토목부문보다 고용효과가 크지만, 건축부문 위축이 더 두드러질 전망이므로

⇒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에서의 고용증대 감소폭 확대 우려

* 공종별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건축 24.5, 토목 18.6

* 건설투자를 보충할 만한 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설경기의 급

격한 하락을 막을 대책이 긴요

II. 기본 방향

-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이 하반기 이후 성장, 고용 등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
- ⇒ 공공·민간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 균형개발사업 등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을 추진

III. 세부 추진계획

1. SOC투자 확대

(1) SOC 예산 조기집행

-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및 산하공기업 예산의 조기 집행을 추진중
- '04.5말 현재 건교부 연간 예산액(15조 2,613억원)의 50.2%인 7조 6,640억원 집행(상반기 중 57.6%인 8조 7,965억원 집행 전망)
- 산하 공기업도 연간 예산액(13조 1,329억 원)의 49.3%인 6조 4,705억원 집행(상반기 중 55.0%인 7조 9,965억원 집행 전망)

〈문제점〉

공공 건설수주 감소



부동산 경기 위축



대형 국책사업 종료



〈대책〉

- SOC 투자확대
 - SOC 예산 조기집행
 - 추경편성 등 공공 부문 재원 확충
 - 민자유치 활성화

○ 주택건설 촉진

- 택지, 재건축아파트 공급확대
- 리모델링 활성화
-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 주택수요 지원

- 주택수요자의 구매력 보강
- 새로운 임대주택 수요 창출

○ 새로운 유형의 건설사업 추진

- 미래형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
- 복합레저단지 개발
-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시행

(2) 추경편성 등 정부·공공부문 투자재원 추가 확충

- 예산 조기집행으로 3/4분기 이후 사업비 소진이 우려되므로, 추경편성 등으로 SOC 분야에 2조원 지원
- 국민임대주택·치수사업·철도안전 등에 추경을 편성(2,548억원)
 - 국민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한 택지 조기매수비, 공사 선급금 등 1,098억원
 - 재해예방을 위해 낙동강 치수사업 등 700억원
 - 파주 LCD 산업단지 진입도로 250억원
 - 철도안전시설 보강을 위한 건널목 입체화 사업 200억원 등
-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및 산하기관 투자재원 확대
 - * 서민 분양주택 건설 확대(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수정 4,700억원)
- 수도권 택지개발사업 조기추진(토지공사 자체자금 추가확보 4,961억원)
- 주택신용보증기금 지원금 확대(추경 1,000억원)
- 지방교부금 정산을 통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추경 3,909억원) 등
- 예산 조기집행, 여유자금 추가활용 후에도 3/4분기 이후 재원고갈이 예상되는 공기업(도공·토공 등)은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소요투자 재원을 확보
- 도로공사는 영동선 또는 경인선 고속도로 통행료를 담보로, 3,000~5,000억원

규모의 ABS 발행 추진('04.4/4)

- 토지공사는 토지할부매출채권을 담보로 2,000~3,000억원 규모의 ABS 발행 추진('04.4/4)
 - * 장기 저리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한 외화채권발행도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SOC에 대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외국인투자사업도 앞당겨 추진
-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경제자유구역내 SOC 사업에 대한 조기지원을 검토
- AMEC社가 추진중인 제2연육교 건설사업을 앞당겨 착공(11月 이후→10月중)하고, Gale社의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본격 추진

(3) 민자유치 활성화

-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기금 투자 참여를 유도
- SOC펀드 조성 또는 직접투자 방식 등을 통해 연기금의 SOC 투자비중을 확대
 - * 국민연금의 SOC 투·융자 등 대체투자 규모를 '04년 1조원에서 '05년 1조 6천 억원으로 확대 추진('05년 기금운용계획(안))
- '04년 하반기중 우선순위·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연기금 투자 가능 SOC 사업을 2~3개 선정 추진
 -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

주요 공기업의 예산집행 현황 및 전망

(단위 : 억원)

	'04 예산	상반기 집행(율)	하반기 집행예산	여유자금 활용	비고
토공	31,500	21,040(67%)	10,460	4,961	하반기 5,619억원 감소
도공	25,875	13,603(53%)	12,272	-	하반기 1,331억원 감소



- 한 민자사업 추진 틀을 마련하고, SOC 사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지원방안 마련
- * 연기금 투자에 적합한 수익률, 운영수입 보장 체계 마련 및 절차간소화 등
-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자사업과 도 공사업간 통행료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통행료 단계적 현실화 추진
- 민간제안 15개 민자도로사업에 대해, 금년 하반기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 조속히 추진
- 「수도권 고속도로망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경제성·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후, 단계적으로 추진
- ※ 민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토록 제도개선 조치 ('04.5)
- 단독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유찰제도 도입
- 경쟁입찰시 총사업비 검증절차 면제, 인허가 협의 신속진행 등

(4) 최저가 낙찰제 보완

- '03.12 최저가 낙찰제를 5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고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으나, 지나친 저가낙찰이 지속 평균낙찰률 : 65.8% ('01) → 63.0% ('02) → 60.1% ('03) → 58.9% ('04)
- 성남-장호원 국도공사 44.8% 낙찰 ('04.5)
- 덤플링입찰 방지를 위해 저가심의제 및 보증제도 개선
- 부적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입찰자 공종평균 입찰금액 대비 20%이상 낮은 경우를 10%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
- 보증기관을 은행 등으로 확대하고, 역무보증 제도를 금전보증 제도로 개선하여, 보증기관의 책임을 확대

* 역무보증 : 건설사 부도시, 보증기관이 타 업체를 통해 대리시공
○ 담보보증을 폐지하고 건설업체의 신용도와 공사특성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유도
⇒ 하반기중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 개정

(5) 골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부존량 조사를 확대하고,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이 골재채취단지를 관리
- 점·사용료를 인상(10%→30%), 주민지원과 환경복구에 활용
⇒ 하반기중 골재채취법 개정

2. 주택건설 지원 강화

(1) 신규택지 공급확대

-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서는 가용토지 자원의 고갈로 택지확보에 어려움
 - 공공택지는 광역교통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적기공급이 곤란
 - 민간택지도 택지개발절차가 강화되어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
⇒ 택지공급 애로와 주택 수요위축이 맞물려 금년 건설물량(목표 52만호)이 40만호 이하로 감소될 우려
 - * 1~4월 주택건설 실적은 82천호로 전년 동기(136천호)대비 40% 감소
 - 수도권·지방 대도시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확보하고, 민간택지 활성화 방안도 마련
- 《《 공공 택지공급 확대 》》

- 금년중 공공택지 1,300만평(수도권 700만평)을 차질없이 공급
 - 이와 함께 2~3년후의 수요에 대비하여 신규 지정물량을 500만평 확대(당초 계획 1,300만평 → 1,800만평)
- 계획적인 공공택지 개발을 통하여 난개발 및 환경훼손도 최소화
 - « 민간 택지개발 활성화 »
- 아파트 개발허용 기준 완화
 - 나홀로 아파트 건설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중전 준농립, 준도시지역)의 아파트 개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03.1, 국토계획법 시행)
 - 아파트 단지 건설을 위한 최소면적 기준을 10만m² → 30만m²로 상향조정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
 - 그러나, 동 법 시행후 관리지역에서의 민간택지 개발 실적이 거의 없어 택지개발에 애로
 - 관리지역에서의 택지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의 예외를 인정
 - 기존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 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m² 이상도 허용
- ⇒ 하반기중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을 강제체결케 하는 “매도청구권”을 부여
 - 다만, 행사요건을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대상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 운용
 - ⇒ 하반기중 주택법 개정 추진

(2) 표준건축비 현실화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는 18평 이하 소형분양 및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로 분

- 양가와 임대보증금을 규제
 - * 면적 및 충수에 따라 평당 199만원~257만원(평균 230만원)
- 표준건축비가 실제 자재비·노무비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실적이 부진
 - * 기금 지원 소형분양주택 건설은 98년 28천호 → 03년 6천호로 축소
- 실제건축비가 반영되도록 3/4분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추진하되
 - 표준건축비를 신축적으로 설정·운용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유발 요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
 - 원가연동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 * 지역별·공급주체(주공 또는 민간회사)·브랜드 가치·기술력 등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인정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하는 방안 강구

(3) 강북재개발 사업 조기추진

- 1차 3개 지구(은평·길음·왕십리, 3.3만호)는 가급적 조기 추진하고, 2차 12개 지구(12~15만호)도 9월중 기본 개발계획을 확정한 후 “우선추진지구”(3개 내외)를 선정, 금년중 착공 추진
 - * 3월 은평·길음지구 착공에 이어 8월중 왕십리 지구도 착공
- 3차 뉴타운 지구(10여개 내외) 연내 추가 지정 추진
 - * 8월말까지 각 자치구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타당성검토 등을 거쳐 지정

(4)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현행 소유자 100% 동의

- 를 80%로 완화하고, 20%는 매수청구권 부여
- ⇒ '04 하반기 건축법 개정 추진
- 공동주택의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경우, 1층 세대 분 만큼 증축 허용
- ⇒ 건축법시행령 개정('04. 3/4)

(5) 재건축아파트 공급 확대

-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공급확대도 도모
-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임대주택 건설분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
- * 수도권 지역에서 22만호의 재건축 아파트가 적용대상으로 총 4~5만호의 임대주택 건설가능 추정
- ⇒ 하반기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6)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
- 주거환경 개선 2단계 사업(430개 지구)에 예비후보지 64개지구를 추가하고, 사업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 * 1단계 사업 ('01~'05) : 485개지구 1조6천억 투입(국고, 지방비 각 8천억)

3. 주택수요 창출 지원

(1)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 보강

-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활성화
- 주택금융공사는 모기지론 출시이후 총 1조 1,587억 원의 모기지론 판매(3.25~6.15일)

- 그동안 취급한 모기지론을 대상으로 5,520억원의 MBS를 발행(6.15, 평균발행금리 5.0%)
- 모기지론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4,200억원 수준의 양호한 판매실적
- 민간 금융기관도 공사의 모기지론과 유사한 장기주택담보대출상품을 자율적으로 개발·판매중
- * 주요은행 자체 모기지론 취급실적(잔액, 6.18일 기준)
 - 신한은행 17,384억원, 조흥은행 5,953억원, 하나은행 5,358억원
- 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취급 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
 - (현행) 9개 금융기관에서 취급(시중은행 7, 생보 2)
 - (개선) 취급 금융기관을 모든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주택 구입수요 촉진
 - 13개 금융기관을 추가하여 총 22개 금융기관으로 확대
- * 시중은행(11), 지방은행(6), 생보(2), 손보(2), 여전(1)
- 금융기관의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7월말~8월초부터 모기지론 취급 예정
-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 확대
 -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신보의 건전성은 개인 보증사고의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추세
 - 현재 운용배수(04.4월 25.5배)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으며, 현추세가 지속되면 추가보증 공급이 어려운 상황
 - * 04.4월말 현재 보증잔액 : 146,965억원, 보증재원 : 5,762억원
- 추경을 통하여 주택신보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전

- 세·구입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 확충
-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신용대출 시행
 - 신용등급이 낮거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이용이 어려운 실정
 - 금년중 총 1조 4,500억원 지원 예정(04 기금운용계획)이나 5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3,200억원에 불과(집행률 22%)
 - * 대상 :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자자체 추천자
 - * 조건 : 금리 3~5.5%, 상환기간 최장 6년, 대출한도 3,500~6,000만원
 -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한 임차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시행
 - ⇒ 기금 내부규정 개정후 7월중 시행

(2)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건설

- 차가주택 거주자가 46%에 이르나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재고는 3.4%에 불과

민간 장기임대주택 건설계획(03~12 주택종합계획: 건교부)

구분	'03	'04	'05	'06	'07	'08~'12
10년임대/50만호	-	3	5	6	6	30
투자비(조원)		2.7	4.5	5.4	5.4	27

1) 투자비는 호당 9천만원(30평 * 300만원/평)을 적용

- 하여, 대부분이 전·월세 형태로 거주
- 12년까지 민간 장기임대주택 5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나, 임대주택 기피심리, 수익성 미흡 등으로 건설실적 저조
-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을 위하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품질의 중형($85\sim 149m^2$) 임대아파트 공급(연 1~2만호*)
- * 민간 장기임대주택 건설 계획 물량(연 3~6만호) 중 일부를 전환
- ⇒ 활성화를 위해 택지·세제·금융지원 강화
- (택지)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
- 제도개선 효과가 현실화되기 전까지 한시적(05말까지)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택지청약 우선권 부여
- 우선공급규모 : $85m^2$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
- ⇒ 택지개발지침 및 주공·토공의 용지규정 개정
- (세제) 장기임대사업자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까지 확대
- 현행 세제지원은 $85m^2$ 이하 소형 임대주택에 한정되어 있음
- 장기임대사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중형($149m^2$ 이하) 임대주택까지 확대

《현 행》

85m ² 이하 임대주택 40% 이상	85m ² 이하 분양주택 20% 이상
85m ² 초과 분양주택 40% 미만	

《개 선》

85m ² 이하 임대주택 40% 이상	85m ² 이하 분양주택 20% 이상
85~149m ² 임대주택 40% 미만	85m ² 초과 분양주택 35% 미만



세제별		규모별	40㎡ 이하	60㎡ 이하	85㎡ 이하
취득시	취득세	면제	면제	과세	
	등록세	면제	면제	과세	
보유시	종토세	면제	분리과세 (3/1,000)	분리과세 (3/1,000)	
	재산세	면제	50%감면	과세	
양도시	양도세	5호이상 건설5년 · 매입10년 임대 중과(60%)배제 (단, 10·29이전 등록사업자는 2호·5년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5호이상 10년 임대 면제(세율 : 30%)			

- 종합토지세 분리과세(3/1000),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제
⇒ 지자체 조례, 소득세법시행령 및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금융)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및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 장기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사업성, 업체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민주택기금 지원조건 개선(이자율 인하) 검토
-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펀드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추진
- 신탁형 간접투자펀드외에 회사형 펀드도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다양한 투자기회 부여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 명목회사형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REITs)의 도입을 추진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현재 법제처 심사중
-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유도
-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

을 주택건설업자 외에 연기금, REITs 등 까지 확대 ⇒ 주공 · 토공 규정 개정

○ 개발사업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자본금의 30%)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출자 추진

⇒ 주택법 개정 추진(부동산투자회사법은 개정중)

* CR REITs는 성격상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가 곤란하고, 실체형 REITs도 수익성이 없어 임대사업 투자가 전무한 실정

※ 이와 함께, 10.29 대책 등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은 혼들림 없이 추진하면서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 관리제도

* '04.1~5월 주택가격(%) : 서울(1.3), 부산(-1.1), 대구(-0.3), 광주(-0.4)

* '04. 5월 거래량 : 전국 (-37.6%), 서울 (-39.4%), 강남 3개구(-67.2%)

4. 중장기 추진과제

■ 화성 · 판교 · 파주 · 아산 등 신도시 개발 사업을 최대한 조기 착수하고, 시화간석지 개발사업도 본격 추진

○ 하반기 중 화성 동탄지역 주택건설 착공, 시화 북측간석지 복합 산업단지(Multi-Techno Valley) 착공 추진

■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산업 특성별로 묶어 집단이전하여『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1~2개 쪽의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산 · 학 · 연 · 관 네트워크의 중핵으로 육성

■ 기업의 자율성 ·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개발과 고용창출 효과 기대
- 전경련 견의 내용을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7월중 마련
-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급증하는 여가수요를 흡수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추진
- 금년중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특화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하반기중 1차 특구지정 추진

IV. 과제별 추진일정

세부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처
1. SOC 투자확대		
(1) SOC 예산 조기집행	지속추진	건교부(산하기관)
(2) 공공부문 투자재원 추가 확충	'04. 3/4	건교부(산하기관)
(3) 민자유치 활성화	'04. 4/4	재경·건교·기예처
(4) 최저가 낙찰제 보완	'04. 3/4	재경부
(5) 골재 공영관리	'04. 4/4	건교·해수·환경부
2. 주택건설 지원 강화		
(1) 신규택지 공급확대	'04. 4/4	건교부
(2) 표준건축비 현실화	'04. 3/4	재경·건교부
(3) 강북재개발 사업 조기추진	지속추진	건교부·지자체
(4)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04. 3/4	건교부·지자체
(5) 재건축아파트 공급 확대	'04. 4/4	건교부
(6)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지속추진	건교부·지자체
3. 주거수요 창출 지원		
(1) 주택구매능력 보강	'04. 3/4	재경·건교부
(2)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	'04. 3/4	재경·건교·행자부
(3) 지방 토기억제제도 탄력적 운영	'04. 4/4	재경·건교부
4. 중장기 추진과제	지속추진	건교부